

<첨부자료 2>

수의사연수교육 관련 안내문



1. 교육개요

1) 교육의무사항

-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1년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함
- 근거 : 수의사법 제34조,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

2) 교육위탁실시

- 연수교육의 교과내용 및 실시방법 등은 수의사회 회장이 정하여 실시함
- 근거 : 수의사법 제27조, 수의사법시행령 제19조,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

3) 대한수의사회 「수의사연수교육규정」 제정 · 운영

- 연수교육의 세부사항은 수의사회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· 실시 중임
- 수의사연수교육규정에 따라 수의사회 각 시 · 도지부 및 수의관련학회 등에서 교육 실시
※ 덧붙임2 「수의사연수교육규정」 참조

4)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

- 당해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수의사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
- 수의사회에서 교육자 명단을 취합하여 다음연도 2월까지 농림부에 보고
 - 보고된 교육결과는 각 시 · 군 · 구 지자체로 송부되어 해당 지자체의 판단(처분여부와 과태료 경감 액수 등)에 따라 행정처리됨

2. 교육 대상자

1) 교육 대상자

-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
 - 동물병원 신고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
 - 동물병원에 새로 종사하게되는 진료수의사는 수의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「동물병원개설

신고사항 변경신고서」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

※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동물병원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

2) 교육 면제자

- 수의과대학 등 교육기관 종사자
 - 수의과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면제함
 -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 진료수의사 신고된 대학원생 또는 고용된 전임수의사는 교육 면제자가 아님
- 정부기관 종사자
 - 정부기관에서 개설한 동물병원(수의과대학 부속병원 제외)에 종사하는 공직 수의사

3) 교육 경감 사유가 있는 자

-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시간을 경감할 수 있음
 -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자
 - 국외에 체류중인 자
 - 기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위험의 사유로 인해 교육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하며, 신고된 경우에는 경우에만 해당됨

3. 교육기관

1) 수의사연수교육 실시 기관

- 대한수의사회 및 각 시·도지부
- 산하단체
 - 한국우병학회
 - 한국동물병원협회
 - 한국양돈수의사회
 - 한국양계수의사회
 - 수생동물질병수의사회 등
- 대한수의사회장이 인정하는 수의관련 학회
 - 대한수의학회
 - 한국임상수의학회

- 한국가축위생학회
-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
- 한국전통수의학회
- 한국수의병리학회
- 한국수의해부학회
- 한국유질유방염연구회 등
- 기타 대한수의사회장이 인정하는 수의학교육기관 및 단체 등
 - 연수교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술행사시 사전에 공고함 ※ 근거 : 수의사연수교육규정 제6조(위탁실시)

4. 교육이수 시간

1) 교육이수 시간 (연간 총 10시간 이상)

■ 교육시간 구분

- 필수교육 : 종사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부 수의사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5시간 이상 수료해야함
- 선택교육 : 나머지 5시간은 교육 주최기관에 관계없이 수료 가능함
- 2개소 이상의 동물병원 개설자 또는 종사자는 동물병원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부수의사회 교육을 각각 5시간 이상씩 받아야함
 - 2개소 개설자(종사자)는 각각 필수교육 5시간(총 10시간 교육), 3개소 개설자(종사자)는 각각 필수 교육 5시간(총 15시간 교육)
※ 위의 경우 필수교육이수시간이 10시간이 되는 경우 선택교육은 받지 않아도 무방함

2) 신규 개설자(종사자) 및 폐업자

■ 당해연도 신규 개설자(종사자) 및 폐업자

- 당해연도 7월 이전 개설자(종사자)는 5시간 이상, 7월 이후 개설자(종사자)는 당해연도는 면제
- 당해연도 7월 이전 폐업자는 면제, 7월이후 폐업자는 5시간 이상 받아야 함
※ 위의 경우 5시간은 필수교육을 받아야함
- 다만, 당해연도 상반기 개설(종사)하고 당해연도 하반기 폐업하는 경우와 당해연도 하반기 개설(종사)하고 차기연도 상반기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교육은 면제함('08년 1월 1일부터 적용)
 - 예시 : '08년 3월 개설(종사)하여 '08년 11월 폐업하는 경우
 - 예시 : '08년 9월 개설(종사)하여 '09년 5월 폐업하는 경우

5. 기타 교육안내 및 교육비

1) 교육안내

-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공고
- 문서발송을 통한 개별안내
 - 우리회 회원의 경우 각 시도지부에서 안내문 발송, 임상종사자 전체에 대하여는 각 시·군·구 자체에서 안내문 발송

2) 교육비

- 수의사연수교육 교육비는 강사료, 교육장사용료, 경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
 - 교육기관의 교육별로 책정된 교육비는 사전에 공고함

대한수의사회 각 시·도지부 <연수교육 관련 문의>

지부	우편번호	주 소	☎	FAX
서울	136-075	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10-126	02)953-4050-4	953-4056
부산	611-086	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936-22	051)852-9524	852-9525
대구	706-828	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48-2	053)764-3708	7624315
인천	403-829	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10-101호 2층 백운동물병원	032)526-7502	526-7502
광주	500-842	광주 북구 용봉동 1219-12	062)527-8842	527-8845
울산	680-828	울산시 남구 신정2동 657-1 사랑동물병원	052)273-0075	265-0795
경기	443-270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-4	031)242-0258	214-0254
강원	200-954	강원도 춘천시 헌재동 685-8 좋은동물병원3층	033)243-2238	253-2238
충북	368-907	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600-8	043)838-9264	838-9265
대전·충남	301-815	대전시 중구 부사동 98-13	042)256-5250	256-5262
전북	561-810	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267-13	063)254-2992	253-2994
전남	500-842	광주 북구 용봉동 1219-12	062)527-8842	527-8845
경북	706-828	대구 수성구 상동 348-2	053)762-4314	762-4315
경남	660-360	경남 진주시 초진동 423	055)762-7600	762-7649
제주	690-162	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82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	064)754-5431/3	710-4139
군진	321-923	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-19	042)550-7441/2	042)551-0648

* 본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-5번지 수의과학회관 4층 대한수의사회(우 : 463-824) 전화(031-702-8686), 전송(031-702-1020)